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[6574] / 보험연구팀 팀장 김선우[6576] / 팀원 천승민[6580]/ E-mail : kmaruc26@gmail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06472호

시행일자 2026. 9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84호(2026.08.31.)

2. 상기 근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,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일부개정 주요내용

○ [별표 2] 제1호 가목 중,

- '비타민-[정밀면역검사-간이검사]', '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-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' 적용일·평가완료차수 변경

○ [별표 2] 제1호 다목 중,

- '스프린트(ONE STEP TYPE)' 적용일·평가완료차수 변경

- '심박기 전극삽입 유도용 카테터(STEERABLE TYPE WITH ELECTRODES)' 적용일·평가주기·평가완료차수 변경

붙임

1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hwpx) 1부.
2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(pdf) 1부.
3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(hwpx) 1부.
4.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 일부개정(pdf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전문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사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